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~70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6. 12. 7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1. 개정이유

-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체계 혁신 2단계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 과를 신설함에 따라
-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 범위내에서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조정

- 공무원정원 : 680명(변동없음)
 - 직급별 정원 조정
 - * 5급 : 31명 ⇒ 32명(증 1명)
 - * 9급 : 64명 ⇒ 63명(감 1명)
 - 소속기관별 정원 조정 : 복지관담당 본청 이관(4명)
 - * 본청 : 265명 ⇒ 269명(증 4명)
 - * 사업소 : 64명 ⇒ 60명(감 4명)

나.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

- 당초 06.12.31일 ⇒ 변경 08.12.31일로 연장
 - * 복식부기 전담 인력 : 2명(6급 1, 8급 1)
 - * 일제강점하 피해진상규명 전담 인력 : 1명(7급)

다. [별표]의 정원관리기관별 두는 직급별 정원 조정 현황 참조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관련한 조직관리 지침 **【도 행정과-11382(2006. 9.19)호】**
-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자치단체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승인 **【도 행정과-12688(2006. 10.17)호】**

나. 예산조치 : 인건비 45,000천원 정도 소요

다. 기 타

- (1)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(붙임 별표 개정)
- (2)입법예고(2006.11. 1 ~2006.11.20)결과 : 의견제출 없음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한시정원)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8명(6급3명, 7급3명, 8급2명)중 3명(혁신
분권 업무 : 6급1명 · 7급1명 · 8급1명)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, 2명
(사업별예산제도 업무 : 6급1명 · 7급1명)은 2007년 12월 31일, 3명(복식부기
업무 : 6급1명 · 8급1명, 일제강점하피해조사 : 7급1명)은 2008년 12월 31일
로 한다.

[별표]

거창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(제3조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		사업소	읍	면	
				소계	기술센터	보건소				
총 계	680	269 (265)	14	134	61	73	60 (64)	45	158	
정 무 직	1	1								
일반직	소계	534	219	8	78	23	55	40 (42)	40	147
	4급	2	1	0	1	1	0	0	0	0
	4~5급	2	1	0	1	0	1	0	0	0
	5급	32 (31)	12 (11)	3	2	1	1	3	1	11
	6급	143	64 (63)	3	10	5	5	10 (11)	12	44
	7급	165	81 (80)	2	25	10	15	12 (13)	12	33
	8급	127	49	0	35	5	30	9	10	24
	9급	63 (64)	13 (14)	0	4	1	3	6	5	35
별정직	소계	17	1	0	16	0	16	0	0	0
	6급	1	1	0	0		0	0		
	6~7급	16	0	0	16		16	0		
연구사	4	1	0	2	2		1			
지도직	소계	32	0	0	32	32	0	0	0	0
	지도관	2	0	0	2	2				
	지도사	30	0	0	30	30				
기능직	소계	92	45 (43)	6	6	4	2	19 (21)	5	11
	6급	3	1	0	1	0	1	1	0	0
	7급	9	3	1	2	1	1	3	0	0
	8급	14	2	2	0	0	0	3	1	6
	9급	28	19 (18)	1	1	1	0	5 (6)	1	1
	10급	38	20 (19)	2	2	2	0	7 (8)	3	4